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98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신성범 · 김재섭 · 김태호
박정하 · 박충권 · 서천호
임이자 · 조은희 · 주호영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유 보전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이후 농지 취득과 처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실제 농지 거래가격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특히 농지 투기는 ‘비농민’이 주도한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를 농민, 특히 고령층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투기 지역과는 거리가 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대하여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체험영농, 농지 임대차 등에서의 농지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 활용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6조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각각 “농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한다.

제44조 본문 중 “시·구·읍·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구·읍·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②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u>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u> 를 소유하는 경우	3. ----- <u>농지</u> -----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u>농지</u>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5. ----- ----- <u>농지</u> ----- ----- -----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우

5의2. (생략)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
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는 경우

7. ~ 9. (생략)

② (생략)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
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
정한다.

-

5의2. (현행과 같음)

6. -----
-----농지-----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

농업진흥지역-----.

② ~ ④ (생 략)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 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u>시·구·읍·면에</u>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 로 설치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을 제외한 <u>시·구·읍·면</u> -----. ----- ----- ----- ----- ----- -----.
--	---